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9. 7. 23.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7월 2일

충청북도지사

2. 회부일자 : 2009년 7월 8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7. 13.)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동인)

1. 제안이유

근거법령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부서별 권한위임사항의 변경(추가 및 삭제 등)

○ 제2조제1항 별표 1(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 경제정책과 >

-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삭제

-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수리, 영업의 휴·폐업·재개의 신고수리가 시장·군수에게 직접 위임
- ▶ 영업의 정지명령이 시·도지사 권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변경
- 통신판매 신청 등 수리, 직권말소, 위반행위 조사 등을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을 위임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기업지원과 >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신고증 교부, 변경신고 수리 등 17개 노동조합(2개 시·군이상에 걸친 노동조합 제외)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업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

※ 관계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자원관리과 >

-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삭제
 - ▶ 전기사업자의 타인 토지 등 출입허가 및 토지공간 사용허가
 - ▶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변경) 등록업무가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
 - 중복된 위임사무 삭제
 - ▶ 전기사업자,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
 - 계량, 공산품 안전관리, 전기용품 안전관리 등 위임사항에 대한 사무명 변경 및 정비
- ※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계량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지역개발과 >

- 택지개발사업 시행관련 분묘 등의 이전명령제도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중복(타부서)된 위임사무 정비(도시관리계획 관련)
 - ※ 관계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 교통물류과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이 시장·군수사무로 변경
-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의 정기점검제도, 터미널사업자의 교통사고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시·군 위임사무에서 삭제
 -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농산지원과 >

-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삭제
-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사항이 시장·군수사무로 변경
 - ※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 축산과 >

-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도감독” 사무와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폐지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해양수산사업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 시장·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
 - ※ 관계법령 : 수의사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 문화예술과 >

-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경내지에서 건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위임사무에 추가 (규칙의 위임사무에서 삭제)

※ 관계법령 : 전통사찰보존법

○ 제2조제4항 별표 4(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총 무 과 >

-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운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호봉승급 권한을 도지사로 환원

나.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 등 정비

- 경제정책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자원관리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계량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지역개발과 : 도시개발법
- 교통물류과 :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농산지원과 : 식물방역법
- 축 산 과 : 약사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 문화예술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총 무 과 : 지방자치법(별표 2)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도록 위임사무를 삭제·변경·추가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일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기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자원관리과, 지역개발과, 교통물류과, 농산지원과, 축산과,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경제정책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 	<p>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동법 제5조제1항</p> <p>동법 제5조제2항, 동법시행령제3조 동법 제12조제1항</p> <p>동법 제12조제7항</p> <p>동법 제13조제1항</p> <p>동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p> <p>동법 제13조제3항, 제4항</p> <p>동법 제17조제1항</p> <p>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p> <p>동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2조</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p>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p> <p>동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조</p>
기업지원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 동법시행령 제5조</p>
자원관리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관한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변경) 허가 나.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 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 라. 지위승계 신고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과징금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아.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및 해임요구 등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징수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p> <p>동법 제4조</p> <p>동법 제7조</p> <p>동법 제8조</p> <p>동법 제9조</p> <p>동법 제10조</p> <p>동법 제12조</p> <p>동법 제16조</p> <p>동법 제40조</p> <p>동법 제52조</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동법 제34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한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동법 제39조제6항 동법 제40조제4항 동법 제78조제4항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변경,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 청문 등 나.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검사의 증인 다. 보고 및 검사 등(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라. 개선명령 마. 부정계량기의 처리(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38조 및 41조 동법 제32조 및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51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등록, 변경등록 및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신고수리, 석유판매업(주유소)의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수리 나.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8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 등록 및 변경등록,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8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및 행정대집행	동법 제30조
	9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검사	동법 제38조
	10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청문	동법 제40조
	11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7조
	12	·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29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7조
	13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징수	동법 제41조
	14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제8848호, 2008.1.17> 제2항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15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동법 제18조제2항
	16	·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동법 제21조제2항제2호제3항
	17	·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동법 제28조
	18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1조제1항 동법 제6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동법 제78조제4항
	19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 · 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41조
	20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 · 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8조
지역개발과	1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2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담보, 열람 및 고시	동법 제88조부터 제91조까지
	3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동법 제133조
	4	·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립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행위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도시개발법 제4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7조, 제18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58조
	5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리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 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동법 제66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동법 제52조 동법 제53조
	6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편의민족 주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변경포함)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교통물류과	1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 신청의 처리 등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착봉인 등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 이행여부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여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취소, 사업정지 명령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차.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운행정지명령 및 임시검사명령 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자동차저당법 제4조 자동차관리법 제7조 동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20조, 제21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 수리 나. 조종사의 면허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 다.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8조
	3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마. 등록번호표의 반납 바.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제작 명령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동법 제3조, 제5조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1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사.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취소	동법 제8조의2
교통 물류과		아. 보고 및 검사 자.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차.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카. 매매용건설기계의 신고 타.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파. 건설기계사업(대여, 매매업) 등록의 수리 하.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35조 동법 제44조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동법 제34조의2 동법 제21조 동법 제24조
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5		·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용·승합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나. 화물자동차사용신고·변경신고, 폐지신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6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7		· 자동차의 사용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8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다. 공사의 완성 라. 사용개시 마. 사용약관 인가 바.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아. 터미널의 관리 자.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차. 사업개선 명령 카. 사용명령 타.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휴지 및 폐지 파. 면허의 취소 하. 과징금 처분 거. 청문 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더.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레. 정관변경 등의 명령 머. 재정지원, 조합감독 비.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시 관계 행정기관장간의 협의 및 통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동법 제38조 동법 제38조제4항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제3항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85조 동법 제88조 동법 제86조 동법 제53조 동법 제54조 동법 제56조 동법 제50조, 제57조 동법 제47조제3항, 제4항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 물류과	9	· 자동차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처리 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다.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제56조 동법 제56조
	10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차. 청문 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동법 제31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10조제2항, 제35조 동법 제14조제1항, 제38항 제5조 동법 제15조제1항, 제35조 동법 제16조제2항, 제35조 동법 제85조 동법 제86조 동법 제88조 동법 제94조
농산 자원과	1	· 방제비용 부담통지서의 교부	식물방역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조1항
	2	·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동법 제23조
	3	·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단,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 제2항 동법 제12조제2항 동법 제12조제3항
	4	· 다음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미만의 논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단, 2㏊이상 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 나. 소규모(10㏊미만) 개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41조제1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3조
	5	·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동법 제17조
	6	·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4조 제0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
	7	· 도유재산 용도폐지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 약사 변경 신고의 수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약사법 제45조제2항, 동물용의약품 등취급규칙 제20조
문화예술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대한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전통사찰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녹지 및 도시자연공원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 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하는 행위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산지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2항제1호 동법 제9조제2항제2호 동법 제9조제2항제3호 동법 제9조제2항제4호 동법 제9조제2항제5호

[별표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2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총 무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 내 전보권 ·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1조

[별표 4]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4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 관	근거법령
총 무 과	1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학내 전보권 · 부교수이하 임용권	충북도립대 총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5항
	2	· 5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자치연수 원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 6급이하 지방공무원(지도사·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 5급상당 지방연구관·지도관의 공무원의 원내전보권 (연구소장 및 시험장장은 제외)	농업기술 원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 의 원내 전보권	보건환경 연구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5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도로관리 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6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 원의 소내 전보권	산림환경 연구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7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축산위생 연구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8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농산사업 소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9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청남대관리 사업소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신·구 조문 대비 표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경 제 정 책과	1	(생략) 가. ~ 라. (생략) 마. (생략) 바. ~ 차. (생략)	동법 제12조 5항	경 제 정 책과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 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법 제12조 7항
	2	(생략) 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 사항의 신고수리 나. 통신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수리 다. 영업의 정지 <u><신설></u>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17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6조 <u><신설></u>		2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가.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 4조
		<u>라. 과태료의 부과징수</u>	동법 제64조			<u>나. 과태료의 부과징수</u>	
기 업 자 원과	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2개시군이상에 걸친 노동조합은 제외, 이하 제21 호까지 같다)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제10 조, 동법시행규 칙제2조	기 업 자 원과	<u><삭제></u>	<u><삭제></u>	
	2	·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교부 및 제교부	동법 제12조, 동 법 시행령제3 조 동법시행규칙제4 조		<u><삭제></u>	<u><삭제></u>	<u><삭제></u>
	3	·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1조, 동 법 시행령제10조, 동법시행규칙제3 조 제3조 제 조		<u><삭제></u>	<u><삭제></u>	<u><삭제></u>
	4	· 임시총회의 소집권자 지명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제 18조, 동법시행 규칙제9조		<u><삭제></u>	<u><삭제></u>	<u><삭제></u>
	5	· 노동조합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명령	동법 제16조 제21조		<u><삭제></u>	<u><삭제></u>	<u><삭제></u>
	6	· 노동조합의 자료제출	동법 제27조, 동 법시행령 제12조		<u><삭제></u>	<u><삭제></u>	<u><삭제></u>
	7	· 노동조합의 해산신고수리	동법 제28조, 동 법시행령 제13 조 동법시행규칙제 10조		<u><삭제></u>	<u><삭제></u>	<u><삭제></u>
	8	·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동법 제31조, 동 법시행규칙 제11 조		<u><삭제></u>	<u><삭제></u>	<u><삭제></u>
	9	·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 결정 및 공고	동법 제36조		<u><삭제></u>	<u><삭제></u>	<u><삭제></u>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기 업 자원과	10	· 노동관계의 지원 신고수리	동법 제4조 동 법시행령 제19 조 동법시행규칙제 11조3	기 업 자원과	<삭제>	<삭제>	<삭제>
	11	·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동법 제4조, 동 법시행령 제22 조 동법시행규칙제 12조		<삭제>	<삭제>	<삭제>
	12	· 직장폐쇄 신고수리	동법 제4조, 동 법시행규칙제 12조 의2		<삭제>	<삭제>	<삭제>
	13	·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93조 동법시행령제34 조		<삭제>	<삭제>	<삭제>
	14	· 노동조합의 대표자등에 대한 명령 등의 통보	동법시행령 제11 조		<삭제>	<삭제>	<삭제>
	15	· 노동쟁의행위의 신고수리	동법시행령 제7 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삭제>	<삭제>	<삭제>
	16	· 폭력행위등의 신고수리	동법시행령 제8 조		<삭제>	<삭제>	<삭제>
	17	· 노동단체카드 작성관리	동법시행규칙 제7조		<삭제>	<삭제>	<삭제>
	18	(생략)		1	(현행과 같음)		
자 원 관리과	1	· 전기사업자의 타이 토지 등 출입허가	전기사업법 제 88조제2항 제 항	자 원 관리과	<삭제>	<삭제>	<삭제>
	2	· 10㎾ 미만으로서 전기수용설비 500KW 미만 및 발전용량 200㎾미만의 자가 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동법 제71조		1	·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 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3	·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변경) 등록	고압 가스안전 관리법 제5조 제1항		<삭제>	<삭제>	<삭제>
	4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동법 제4조
		나. (생략)	동법 제3조의2			나. (현행과 같음)	동법 제7조
		다. (생략)	동법 제6조			다. (현행과 같음)	동법 제8조
		라. (생략)	동법 제7조			라. (현행과 같음)	동법 제9조
		마. (생략)	동법 제8조			마. (현행과 같음)	동법 제10조
		바. (생략)	동법 제8조의2			바. (현행과 같음)	동법 제11조
		사. (생략)	동법 제10조			사. (현행과 같음)	동법 제12조
		아. (생략)	동법 제14조			아. (현행과 같음)	동법 제16조
		자. (생략)	동법 제36조의 2			자. (현행과 같음)	동법 제40조
		차. (생략)	동법 제48조			차. (현행과 같음)	동법 제52조
	5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6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에너지이용환경화 법 제38조제5항 동법 제38조제 항 동법 제39조제 항 동법 제100조		4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에너지이용환경화 법 제39조제5항 동법 제39조제 항 동법 제40조제 항 동법 제78조제 항
	7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개조 의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	동법 제1조		<삭제>	<삭제>	<삭제>
	8	· 전기사업자의 타인의 토지공간 사용허가	동법 제39조제 항		<삭제>	<삭제>	<삭제>
	9	· 계량기의 제작업등의 등록(계량 수리업, 증명업에 한함) <신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설>	자 원 관리과	5	·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변경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 청문 등 나.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검사의 종이 다. 보고 및 검사 등(계량기제작업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라. 개선명령 마. 부정계량기의 처리(계량기제작업 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계량기제작 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 한다)	<삭제>
		<신설>	<신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38조 및 41조 동법 제32조 및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51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0	·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계량수리업, 증명업에 한함) 가. 청문	동법 제38조 동법 제41조제 항		<삭제>	<삭제>	<삭제>
	11	·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검사의 종이 가.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동법 제32조 및 제33조 동법시행규칙제 34조		<삭제>	<삭제>	<삭제>
	12	· 보고 및 검사등	동법 제34조		<삭제>	<삭제>	<삭제>
	13	· 개선명령	동법 제35조		<삭제>	<삭제>	<삭제>
	14	· 부정계량기의 처리	동법 제37조		<삭제>	<삭제>	<삭제>
	15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동법 제51조, 동 법시행령 제33 조		<삭제>	<삭제>	<삭제>
	16	(생략)			6	(현행과 같음)	
	17	(생략)			7	(현행과 같음)	
	18	(생략)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19	(생략)			9	(현행과 같음)	
	20	(생략)			10	(현행과 같음)	
	21	(생략)			11	(현행과 같음)	
	22	(생략)			12	(현행과 같음)	
	23	(생략)			13	(현행과 같음)	
	24	(생략)	승강기제조및관리 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4항		14	(현행과 같음)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부칙 제 888호 208 1 17. 제2항
	25	(생략)			15	(현행과 같음)	
	26	(생략)	동법 제21조제 항제4호		16	(현행과 같음)	동법 제21조제 항 제2호, 제3항
	27	(생략)			17	(현행과 같음)	
	28	(생략)			18	(현행과 같음)	
		가. (생략)	에너지이용환경화 법 제5조제1항			가. (현행과 같음)	에너지이용환경화 법 제31조제1항
		나. (생략)	동법 제39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나. (현행과 같음)	동법 제36조제 항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다. (생략)	동법 제 10조 제2항			다. (현행과 같음)	동법 제78조제 항
29		· 다음 공산품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판매중지·개선·파기·수거명령 등	품질경영및공산 품안전 관리법 제31조	자 원 관리과	19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 31조
		나.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삭제>	
		다.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				<삭제>	
		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삭제>	
		마.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환 불· 수리 등의 명령				<삭제>	
		바. 보고 및 검사등	(생략)			나. 보고 및 검사등	(현행과 같음)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생략)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행과 같음)
30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항			20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파기·수거명령 등에 관한 사항	전기용품 안전관 리법제8조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 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제19조
		나.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환불· 수리 등의 명령	동법 제8조			<삭제>	
		다. (생략)	동법 제11조			나. (현행과 같음)	동법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라. (생략)	동법 제18조			다. (현행과 같음)	동법 제28조
지 역 개발과	1	· 택지개발사업 시행관련분묘등의 정리 (생략)	택지개발촉진법 제15조	지 역 개발과	<삭제>	<삭제>	<삭제>
	2	·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	동법 제32조		3	(현행과 같음)	<삭제>
	3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	동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삭제>	<삭제>	<삭제>
	4	(생략)	동법 제38조		삭제>	<삭제>	<삭제>
	5	(생략)	동법 제38조		1	(현행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6	(생략)	동법 제38조		2	(현행과 같음)	
도시기반시설과	7	(생략) 가. 개발계획변경 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 라. (생략)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기반법 제11조	4	(현행과 같음) 가. 개발계획변경 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 라. (현행과 같음)	도시기반법 제11조
	8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자. (생략)	동법 제19조의2		5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동법 제20조
	9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동법 제24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 동법 제52조		6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동법 제25조
	10	(생략)				(현행과 같음)	동법 제53조
	1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가.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등 나. 사용신고의 거부 다. 도난신고의 처리 라.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마.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바. 운행정지명령 및 정비, 원상복구 명령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동법 제7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37조	교 통 물류과	1	(현행과 같음)	
	1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3				<삭제>	<삭제>	<삭제>
	14				<삭제>	<삭제>	<삭제>
	15				<삭제>	<삭제>	<삭제>
	16				<삭제>	<삭제>	<삭제>
	17				<삭제>	<삭제>	<삭제>
	18				<삭제>	<삭제>	<삭제>
	19				<삭제>	<삭제>	<삭제>
	20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3	사. 사용신고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 가. (생략) 나. 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실시 다. (생략) 라. (생략)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		2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교통 물류과	4	(생략) 가. ~ 사. (생략) 아.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자. (생략) 차. (생략) 카. (생략) 타. (생략) 파. (생략) 하. 건설기계사업(대여, 매매업) 신고의 수리 거. (생략)	동법 제16조	교통 물류과	3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삭제>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카. (현행과 같음) 타. (현행과 같음) 파. 건설기계사업(대여, 매매업) 등록의 수리 하. (현행과 같음)	<삭제>
	5	(생략)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71조		4	(현행과 같음)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79조
	6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80조		6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83조
	7	(생략)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78조		6	(현행과 같음)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87조
	8	(생략)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80조		7	(현행과 같음)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89조
	9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제 항 동법 제39조 동법 제39조제 항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8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제 항 동법 제38조 동법 제38조제 항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사. (생략)	동법 제3조제 항			사. (현행과 같음)	동법 제2조제 항
		아. (생략)	동법 제43조			아. (현행과 같음)	동법 제42조
		자. 사고시의 응급조치 및 보고	동법 제44조			<삭제>	<삭제>
		차. (생략)	동법 제45조			자. (현행과 같음)	동법 제43조
		카. (생략)	동법 제46조			차. (현행과 같음)	동법 제44조
		타. (생략)	동법 제47조			카. (현행과 같음)	동법 제45조
		파. (생략)	동법 제50조			타. (현행과 같음)	동법 제48조
		하. (생략)	동법 제76조			파. (현행과 같음)	동법 제85조
		거. (생략)	동법 제79조			하. (현행과 같음)	동법 제88조
		녀. (생략)	동법 제77조			거. (현행과 같음)	동법 제86조
		더. (생략)	동법 제55조			녀. (현행과 같음)	동법 제53조
		러. (생략)	동법 제56조			더. (현행과 같음)	동법 제54조
		미. (생략)	동법 제58조			러. (현행과 같음)	동법 제56조
		비. (생략)	동법 제51조 제1 조			미. (현행과 같음)	동법 제50조 제1 조
		서. (생략)	동법 제49조제 항 제4항			비. (현행과 같음)	동법 제47조제 항 제4항
10		(생략)			9	(현행과 같음)	
		가. (생략)	회물자동차운수사 업법 제28조			가. (현행과 같음)	회물자동차운수사 업법 제25조
		나. (생략)	동법 제39조			나. (현행과 같음)	동법 제36조
		다. (생략)	동법 제39조, 동 법 시행규칙제52조			다. (현행과 같음)	동법 제36조
11		(생략)			10	(현행과 같음)	
		가. (생략)	회물자동차운수사 업법 제29조			가. (현행과 같음)	회물자동차운수사 업법 제28조
		나. (생략)	동법 제32조			나. (현행과 같음)	동법 제31조
		다. (생략)	동법 제33조			다. (현행과 같음)	동법 제32조
		라. (생략)	동법 제34조			라. (현행과 같음)	동법 제33조
		마. (생략)	동법 제11조제 항 제36조			마. (현행과 같음)	동법 제10조제 항 제35조
		바. (생략)	동법 제15조제 항 제3항 제36 조			바. (현행과 같음)	동법 제14조제 항 제3항 제35 조
		사. (생략)	동법 제16조제 항 제36조			사. (현행과 같음)	동법 제15조제 항 제35조
		아. (생략)	동법 제17조제 항 제36조			아. (현행과 같음)	동법 제16조제 항 제35조
		자. (생략)	동법 제76조			자. (현행과 같음)	동법 제85조
		차. (생략)	동법 제77조			차. (현행과 같음)	동법 제86조
		카. (생략)	동법 제79조			카. (현행과 같음)	동법 제88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타. (생략)	동법 제85조			타. (현행과 같음)	동법 제94조
농 산 자원과	1	(생략)	식물방역법 제26조, 동법 시행 규칙 제39조	농 산 자원과	1	(현행과 같음)	식물방역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삭제>
	2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삭제>	<삭제>	
	3	(생략)			2	(현행과 같음)	
	4	(생략)			3	(현행과 같음)	
	5	(생략)			4	(현행과 같음)	
	6	(생략)			5	(현행과 같음)	
	7	(생략)			6	(현행과 같음)	
	8	(생략)			7	(현행과 같음)	
축산과	1	◦ 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도 감독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축산과	<삭제>	<삭제>	<삭제>
	2	(생략)			1	(현행과 같음)	
	3	(생략)	약사법 제35조 제7항, 동물용의 약품등취급규칙 제10조		2	(현행과 같음)	약사법 제45조 제26항, 동물용의 약품등취급규칙 제20조
	4	◦ 해양수산사업 시설의 관리 · 감독에 관한 시한 가. 시설의 처분 승인권자	해양수산사업실 시규정 제38조		<삭제>	<삭제>	<삭제>
		나. 재산처분의 제한	동규정 제39조		<삭제>	<삭제>	<삭제>
		다. 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의 반환	동규정 제40조		<삭제>	<삭제>	<삭제>
		라. 재산처분 제한의 해제	동규정 제41조		<삭제>	<삭제>	<삭제>
		마. 사업추진실태 보고 및 평가	동규정 제42조		<삭제>	<삭제>	<삭제>
		바. 시설의 관리책임 등	동규정 제43조		<삭제>	<삭제>	<삭제>
		사. 영어조합법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동규정 제44조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문화 예술과	1	◦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대한 허가 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신설>	<신설>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2항제호
		<신설>	<신설>				동법 제9조제2항제2호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다. 전통사찰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녹지 및 도시자연공원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 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p> <p>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마. 「산자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전산자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동법 제9조제1항제3호</p> <p>동법 제9조제1항 제4호</p> <p>동법 제9조제1항 제5호</p>
--	--	--	---

[별표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총무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u>지방자치법</u> <u>제83조</u> 	총무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u>지방자치법</u> <u>제91조</u>

[별표 4]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 대상 기관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 대상 기관	근거 법령
총무과	1~2	(생략)			총무과	1~2	(현행과 같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연구직 · 지도직의 호봉 <u>승급</u> · 6급이하 지방공무원(지도사 · 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 5급상당 지방연구관 · 지도관의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연구소장 및 시험장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술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 (현행과 같음) · 5급상당 지방연구관 · 지도관의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연구소장 및 시험장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농업기술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관리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관리사업소장 	
	6~9	(생략)				6~9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공통 ●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경제정책과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의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 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 9.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 사항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의 수리
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조사

제41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대 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기업지원과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결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결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원관리과

□ 전기사업법

제88조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9조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 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⑧ <생략>

제4조 (허가의 기준) ① <생략>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휴지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그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8848호, 2008.1.17>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제31조 (개선·수거·파기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③ 시·도지사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략>

④ 시 · 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 · 개선 ·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 6. <생략>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9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 · 폐기 · 수거명령 등) ① 시 · 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 · 판매 · 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 · 폐기 또는 수거(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시 · 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 · 판매 · 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자율안전 확인 대상전기용품의 개선 · 폐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 ③ ~ ④ <생략>

⑤ 시 ·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이나 폐기 또는 수거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 · 판매 · 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언론매체 등을 통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위해성 공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
3. 그 밖에 시 · 도지사가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보고와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제6조제3항 각 호의 자 및 제13조제3항 안전관리를 위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안전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 공장 · 사업장 · 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기용품의 제조설비 · 검사설비,

전기용품,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지역개발과

□ 도시개발법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지정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⑩ <생략>

제25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

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② <생략>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자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가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면허·협의 또는 승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 ② <생략>

③ 지정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⑦ <생략>**제6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생략>**

②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통물류과
□ 자동차관리법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조·제9조·제13조제7항·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0조의4·제31조·제31조의2·제32조·제33조·제33조의2·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본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8.3.28>

□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 (정기점검) ①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가 행하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01.1.16>

제29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제 1999.12.28>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사고시의 응급조치 및 보고) 터미널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중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유유품의 보관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고 및 조치의 내용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0.1.28>

제79조 (보고·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농산지원과 ●

□ 식물방역법

제37조(비용 부담) 시·도지사가 제35조에 따라 공동 방제를 한 경우 그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방제의 실시로 수익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

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비용 부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2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축산과 ●

□ 수의사법

제21조 (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위촉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행한다.

□ 약사법

제45조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 ① 법 제44조제2항 및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③ <생략>

④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약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3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수산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 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 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과

□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허가 사항) ① 생략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3.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 「산지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불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